

산업체위탁교육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신입생 선발에 따른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산업체의 범위) 산업체위탁교육에 있어 산업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2.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국
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각급학교
4.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시설강습소)
5. 의료기관, 금융기관, 교육기관
6.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5인이상 고용하는 사업체)
7. 국민연금 제8조 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제7조 제1항(5인이상)이 규정하는 업체
8. 영농종사자,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등
9. 본 대학교와 산학협력 또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산업체 및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10. 자영업자로서 1년 6개월이상 종합소득세 납부자

제 3 조 (위탁형태) 산업체가 단독으로 소정의 인원을 본 대학교에 학과별로 위탁하는 경우를 단독위탁이라 하고, 둘이상의 산업체가 연합하여 위탁하는 경우를 연합위탁이라 한다.

제 4 조 (위탁학생수 및 학급편성) ①위탁학생수는 전체 입학정원의 50%이내로 선발하되 과별 입학정원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②위탁교육은 별도학급으로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학급의 편성·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해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범위내에서 혼합 편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005.3.1)

③별도학급 편성인원은 20명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단, 부득이 별도학급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20명이내라도 별도학급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5.3.1)

제 5 조 (위탁생에 대한 설치학과) 위탁생에 대한 설치학과는 본 대학교에 설치된 기존학과에 의하되 산업체가 원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본과와 관련된 별도학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6 조 (위탁생에 대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위탁생으로 편성된 별도학급에 대하여 적용할 교육과정은 본 대학교와 위탁산업체가 협의하여 새로이 개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의 교육과정은 본 대학교에 개설된 학과 계열에 포함되는 과정으로 하고 유사과정도 여건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제 7 조 (위탁생선발기준) ①위탁생의 선발기준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3학년 편입학은 전문대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학력자)로서 산업체에서 1년 6개월이상 근무중인

자로 한다.(산업체 부설고등학교 산업체 근로 청소년을 위한 고등학교의 야간 특별학급, 야간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에 대해서는 재학기간과 산업체 근무기간이 중복되는 경우라도 그 기간을 산업체 근무기간으로 봄)(개정 2005.3.1)

②위탁생은 산업체에서 추천하여 본 대학교에서 별도로 정한 입시전형절차를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③위탁생은 본 대학교에 설치된 학과에 지원할 수 있으나 가급적 근무직종과 연계지원함을 권장토록 한다.

제 8 조 (위탁생에 대한 학사관리) ①위탁생에 대한 학사관리는 본 대학교의 학칙에 의하되 별도학급의 위탁생에 대한 재학년한을 두지 않는다.

②위탁생이 위탁산업체의 동의없이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제적 처리할 수 있다.

제 9 조 (위탁생의 교과목이수) ①위탁생의 교과목이수는 본 대학교 학칙에 의한 졸업소요학점을 기준으로 하고 전공과목에 해당하는 아래 각호의 교과목에 대하여는 해당학과 교수회의 심사에 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거쳐 그 해당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인된 직업교육기관에서의 동일분야 전공관련 교과목이수
2. 산업체내 연구소 및 사내훈련 기관에 의한 전공분야 교과목의 이수 및 일정기간의 연수 및 현장 실습 이수
3.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기관에 의한 전공 교과목 이수(대학부설 특별과정 및 평생교육과정도 포함)
4. 동일분야 기사 1급이상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해당 시험과목
5. 동일직무에 일정기간 근무경력의 실험, 실습 관련 교과목

제10조 (위탁교육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①위탁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는 위탁산업체의 책임하에 본 대학교의 등록금 납부기간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위탁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는 본 대학교 학과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며,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요원 활동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①위탁교육 산업체와 본 대학교의 산학협동 교육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동 사항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촉진 및 참여
2. 산업체가 필요한 기술개발 과제의 발굴과 교수에 의한 위탁연구 또는 산업체 임직원이나 연구원과의 공동연구의 추진
3. 정규과정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의 추진
4. 교육용 실험실습 시설의 공동개발 및 교육용 기자재 기증
5. 학생생활 지도 및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

②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은 아래 각호와 같이 한다.

1. 산업체내의 강의실 또는 실험실습 시설이 가능한 경우는 위탁생만으로 편성된 별도학급의 강의 또는 실험실습 교육을 산업현장에서 할 수 있다.

2.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산업체 임직원 중 적격자를 본 대학교 해당학과 교수 회의의 심사를 거쳐 추천하면 총장이 겸임교수 또는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위탁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본 대학교에 위탁교육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탁교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산업체 임직원 및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로 한다.

③위탁교육심의위원회는 아래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탁의뢰 산업체 적부에 관한 사항
2. 위탁생의 선발기준
3. 위탁교육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4. 위탁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산업체의 시설 및 교육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에 관한 사항
6. 학교와의 산업체 상호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위탁교육자 제출서류) 위탁교육자로 선발된 자는 아래 각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산업체위탁교육계약서 2부(본 대학교 소정양식)(개정 2005.3.1)
2. 추천서(지원서)1부 (본 대학교 소정양식)(개정 2005.3.1)
3.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5.3.1)

제14조 (위탁교육계약서) 위탁교육산업체와 본 대학교 간의 계약서는 별첨과 같다.

제15조 (시행세칙)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 중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학사행정내규와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1997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199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